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1. 2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24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8.11.26)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기금의 조성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재원을 삭제하고,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삭제
-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거주지 자격을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완화(안 제6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제2조 제3호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되어 있어 이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도록 하는 것을 부산광역시에 거주 주민을 연대보증인 가능하도록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항은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항에 따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제8조 용자금의 상환에 있어 용자금의 상환을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라는 조항을 여러사람이 알기쉽게 해석하기위해 제8조를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주민소득자금은 년1회 생활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라고 부분 수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 11. 26 ----- 김재영 위원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 용자대상과 조례안 제8조 용자상환방법 등 용어의 표현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자구 수정

다. 수정주요골자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